

#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## [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]

의안 번호	제286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   2021. 10.    .  
제출자        김포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2. 사업목적

-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 토지(사유지)를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 등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추진과 민원사항(재산권행사제한)을 해소코자 함.
- 주변 토지의 매입을 통하여 원활한 문화재 복원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, 기존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인 만큼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휴양림, 테마 등산로 등 문수산의 특색을 살린 지역대표 문화자원 활성화 마련.

### 3. 의결대상재산

구분	물종 건류	단위	면적(㎡)	내역	부서명
취득	토지	1필지	246,051	□ 제목 : 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 매입 · 소재지 :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67-1 · 취득규모 : 1필지, 246,051㎡ · 기준가격 : 2,952,612천원 (공시지가) · 취득예상가격 : 6,200,485천원 (토지매입비)	문화예술과

#### 4. 근거법령

- 문화재보호법 제83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
-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

- 붙임 1.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.  
2.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.  
3.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 1부.



(붙임 2)

## 재 산 목 록

○ 취득대상 재산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기준가격	추정가격	취득시기	취득사유	부서명
	종류	소재지	면적					
계	토지		246,051	2,952,612	6,200,485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1	토지	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67-1	246,051	2,952,612	6,200,485	2022.5.	문화재 주변 토지매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	문화 예술과

(붙임 3)

## 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

### 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 토지(사유지)를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보호 등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추진과 민원사항(재산권행사 제한)을 해소코자 함.

### 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67-1
- 규 모 : 1필지, 246,051㎡
- 사업기간 : 2022. 01 ~ 2022. 05
- 사 업 비 : 6,200,485천원(시비 100%)
- 주요내용
  - 문화재구역 및 주변 토지의 매입을 통하여 원활한 문화재 복원 및 보수공사 실시
  - 기존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인 만큼 산림휴양림, 테마 등산로 등 문수산의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으로 활용

#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[단위 : 천원]

총사업비	부지매입비	공사비	설계비	감리비	기 타
6,200,485	6,200,485				

○ 사업비 예산 재원조달 계획

[단위 : 천원]

재원별		연도별			
		합계	2022년	2023년	2024년 이후
합계		6,200,485	6,200,485		
국비					
도비					
시비		6,200,485	6,200,485		
시비	일반회계	6,200,485	6,200,485		
	특별회계				

○ 연도별 사업비 내역

[단위 : 천원]

구분	합계	2022년	2023년	2024년 이후
합계	6,200,485	6,200,485		
부지매입비	6,200,485	6,200,485		
공사비				
설계비				
감리비				
기타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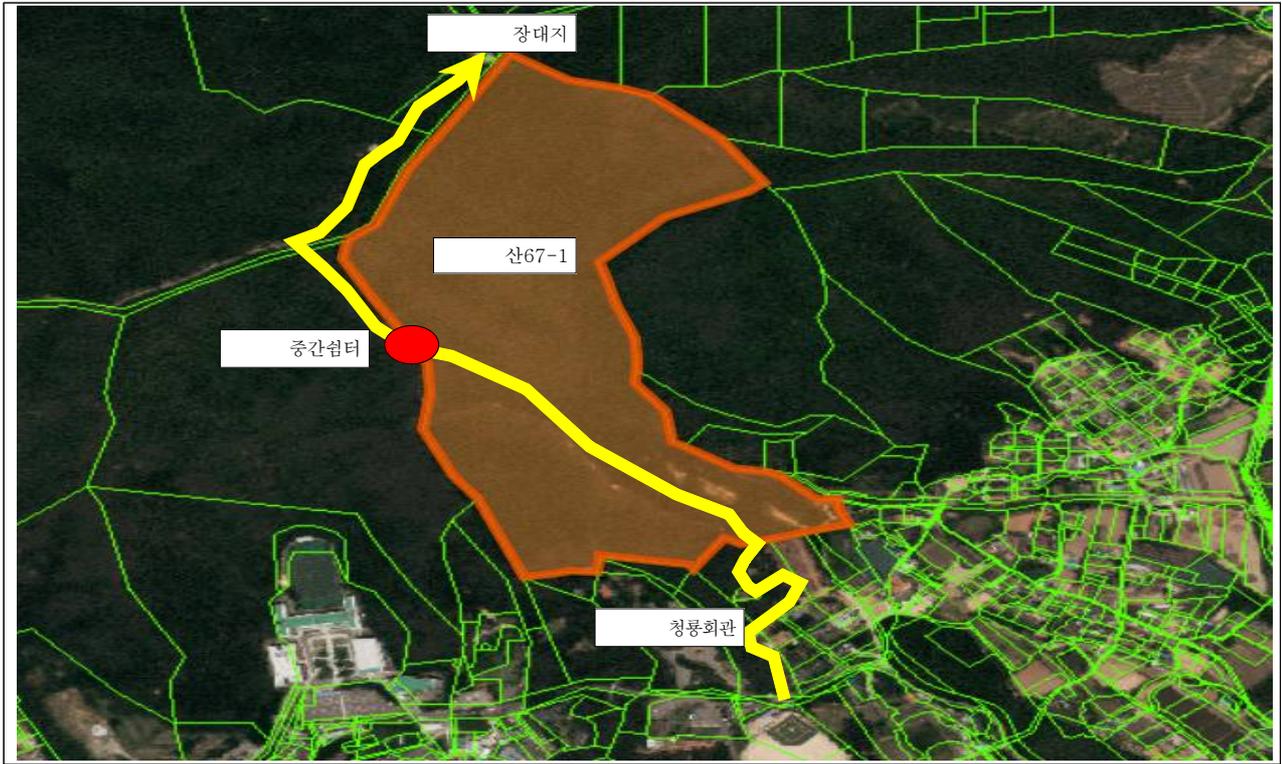
□ 향후 추진계획

- 2021. 10.~11. :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승인
- 2021. 12. : 본예산 확보
- 2022. 02. : 매수협약, 감정평가
- 2022. 05. : 보상협약 실시 및 소유권 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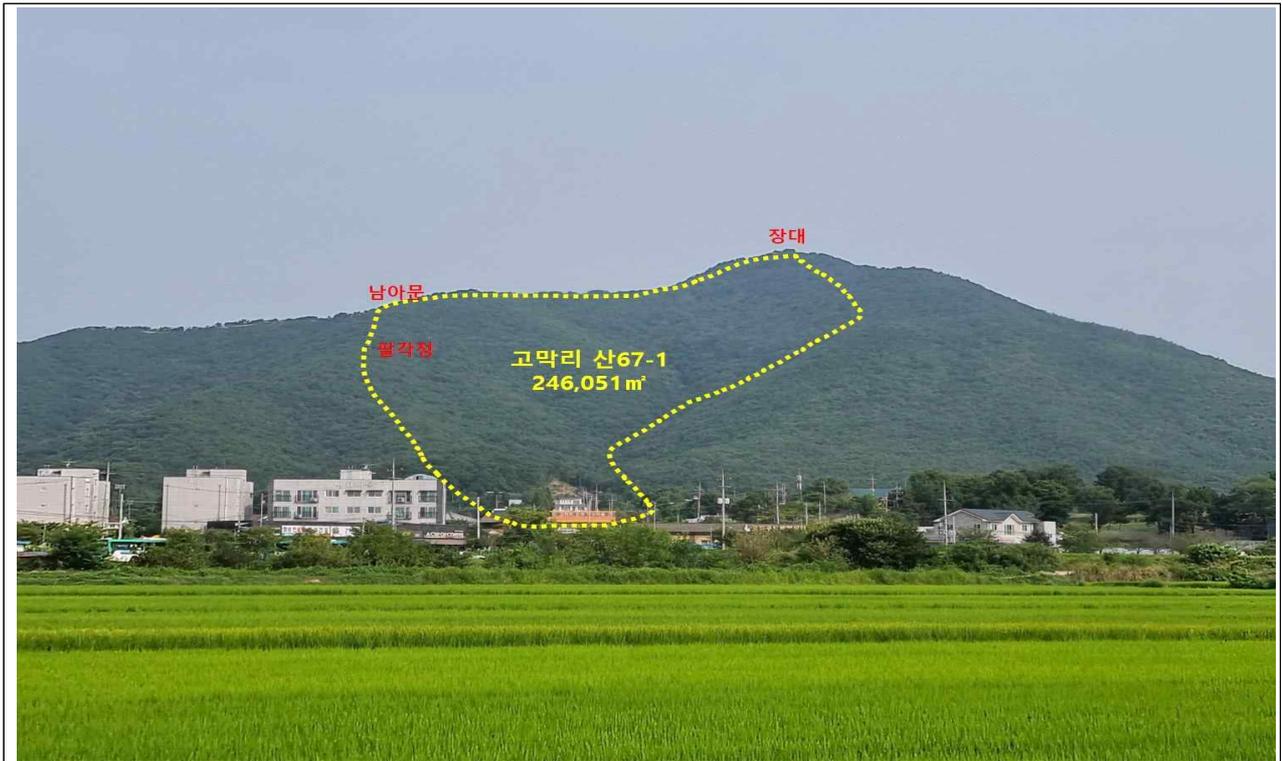
□ 기대효과

-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김포 문수산성 성곽 복원 등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함.
- 토지 매입을 통해 민원사항(재산권행사 제한) 및 원활한 성곽 복원 및 보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·문화·산림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함.

## □ 위치도



## □ 현장사진



## 【관계법령】

### - 문화재보호법 -

제83조(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)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, 건물, 나무, 대나무, 그 밖의 공작물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용(收用)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·소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문화예술과장 한기정
	팀장 직위·성명	문화재팀장 한애경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선경화(☎ 2484)